

瑞山市統·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

審 查 報 告 書

2001. 12. 22

총무위원회

1. 審 查 經 過

가. 提出日字 : 2001. 12. 17

나. 提出者 : 瑞山市長

다. 回附日字 : 2001. 12. 17

라. 上程日字 : 2001. 12. 21

2. 提案說明要旨(提案說明 : 自治行政課長 崔鎮珪)

가. 提案理由

- 읍내동 624-5번지에 소재한 부영아파트는 현재 3개통(34통, 35통, 36통)에 19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1개 반의 구성이 57~58가구로 되어 있어 시평균 1개반 가구수가 34가구인 점을 감안할 때 가구수가 많은 상황임.
- 특히, 부영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서 특성상 전·출입 가구수가 많아 반장 1명이 많은 가구를 관리하기에 업무량이 과중하여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임.

나. 主要骨子

- 현재, 19개반으로 편성된 부영아파트 반구성을 30개 반으로 조정함.
- 읍내34통(101동, 102동) 현행 7개반을 ⇒ 10개 반으로 조정

- 읍내35통(103동, 104동) 현행 6개반을 ⇒ 10개 반으로 조정
- 읍내34통(105동, 106동) 현행 6개반을 ⇒ 10개 반으로 조정

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

-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의 최하부 조직인 「반」을 설치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
- 주요 검토내용은
 - 읍내동 소재 부영아파트는 6개동에 1,093가구가 입주한 대규모 단지이나 그동안 19개반을 구성, 반장1인당 57~58가구를 담당하는등 업무량이 과중한 실정임.
 - 따라서 동지역 1개반 평균 가구수 기준(34가구)으로 분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 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,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 근거를 두고 있음.

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: 생략

5. 討論 및 小數意見 : 없었음

6. 審査結果 : 원안가결

의안번호	제 231 호
의결 (보고) 년 월 일	2001. 12. (제 회)

서산시통·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서 산 시 장
제출년월일	2001. 12. 19.

서산시통·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 239 호
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12. 17.

제 출 자 : 서 산 시 장

□ 개정이유

- 읍내동 624-5번지에 소재한 부영아파트는 현재 3개통(34통, 35통, 36통)에 19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1개 반의 구성이 57~58가구로 되어 있어 시평균 1개반 가구수가 34가구인 점을 감안할 때 가구수가 많은 상황임.
- 특히, 부영아파트의 경우와 같이 임대아파트는 특성상 전·출입 가구수가 많아 반장 1명이 많은 가구를 관리하기에 업무량이 과중하여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임.
- 이와 같은 이유로 현실에 맞도록 분반하여 주민이 행정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도록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

[현행 81통, 258리 1,478반을 ⇒ 81통, 258리, 1,489반으로 조정]

(현행 부영아파트의 3통 19반을 ⇒ 3개통 30반으로 조정)

□ 주요골자

- 현재, 19개반으로 편성된 부영아파트 반구성을 30개 반으로 조정함.
 - 읍내34통(101동, 102동) 현행 7개반을 ⇒ 10개 반으로 반수 조정
[101동, 102동의 1층~3층을 1개반으로 조정 (현재는 1층~5층이 1개반)]
 - 읍내35통(103동, 104동) 현행 6개반을 ⇒ 10개 반으로 반수 조정
[103동, 104동의 1층~3층을 1개반으로 조정 (현재는 1층~5층이 1개반)]
 - 읍내36통(105, 106동) 현행 6개반을 ⇒ 10개 반으로 반수 조정
[105동, 106동을 1층~3층을 1개반으로 조정 (현재는 1~5층이 1개반)]

【안 별표1】

□ 기타 참고사항

- 관련법령
 -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

- 입법예고
 - 예고기간 : 2001.11.23 ~ 12.12
 - 예고결과 : 제출의견 없음.

- 예산조치 : 반장활동비 예산 확보

서산시통·반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

서산시통·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2]의 부촌동의 읍내동의 34, 35, 36통의 반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

읍·면·동	법정동	통명 의칭	반	관할 구역
부촌동	읍내동	34통	1	읍내동 부영APT 101동(101~316호)
			2	읍내동 부영APT 101동(401~616호)
			3	읍내동 부영APT 101동(701~916호)
			4	읍내동 부영APT 101동(1001~1216호)
			5	읍내동 부영APT 101동(1301~1416호)
			6	읍내동 부영APT 102동(101~312호)
			7	읍내동 부영APT 102동(401~612호)
			8	읍내동 부영APT 102동(701~912호)
			9	읍내동 부영APT 102동(1001~1212호)
			10	읍내동 부영APT 102동(1301~1512호)
		35통	1	읍내동 부영APT 103동(101~311호)
			2	읍내동 부영APT 103동(401~611호)
			3	읍내동 부영APT 103동(701~911호)
			4	읍내동 부영APT 103동(1001~1211호)
			5	읍내동 부영APT 103동(1301~1511호)
			6	읍내동 부영APT 104동(101~312호)
			7	읍내동 부영APT 104동(401~612호)
			8	읍내동 부영APT 104동(701~912호)
			9	읍내동 부영APT 104동(1001~1212호)
			10	읍내동 부영APT 1042동(1301~1512호)

읍·면·동	법정동	통명 의칭	반	관 할 구 역
부춘동	읍내동	36통	1	읍내동 부영APT 105동(101~311호)
			2	읍내동 부영APT 105동(401~611호)
			3	읍내동 부영APT 105동(701~911호)
			4	읍내동 부영APT 105동(1001~1211호)
			5	읍내동 부영APT 105동(1301~1511호)
			6	읍내동 부영APT 106동(101~312호)
			7	읍내동 부영APT 106동(401~612호)
			8	읍내동 부영APT 106동(701~912호)
			9	읍내동 부영APT 106동(1001~1212호)
			10	읍내동 부영APT 106동(1301~1512호)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			개				정				안			
[별표] 동지역에 설치하는 통·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				[별표] 동지역에 설치하는 통·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				[별표] 동지역에 설치하는 통·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				[별표] 동지역에 설치하는 통·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			
읍·면·동	부출동	읍내동	통의 명칭	반	관할 구역	비고	읍·면·동	부출동	읍내동	통의 명칭	반	관할 구역	비고		
	부출동	읍내동	34	1	읍내 624-5 부영(아) 101동(101~408)		부출동	부출동	읍내동	34	1	읍내동 부영APT 101동(101~316)			
				2	읍내 624-5 부영(아) 101동(409~808)						2	읍내동 부영APT 101동(401~616)			
				3	읍내 624-5 부영(아) 101동(809~1108)						3	읍내동 부영APT 101동(701~916)			
				4	읍내 624-5 부영(아) 101동(1109~1416)						4	읍내동 부영APT 101동(1001~1216)			
				5	읍내 624-5 부영(아) 102동(101~512)						5	읍내동 부영APT 101동(1301~1416)			
				6	읍내 624-5 부영(아) 102동(601~1012)						6	읍내동 부영APT 102동(101~312)			
				7	읍내 624-5 부영(아) 102동(1101~1512)						7	읍내동 부영APT 102동(401~612)			
											8	읍내동 부영APT 102동(701~912)			
											9	읍내동 부영APT 102동(1001~1212)			
											10	읍내동 부영APT 102동(1301~1512)			

현				개				안			
[별표] 동지역에 설치하는 통·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		[별표] 동지역에 설치하는 통·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		[별표] 동지역에 설치하는 통·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		[별표] 동지역에 설치하는 통·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		[별표] 동지역에 설치하는 통·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		[별표] 동지역에 설치하는 통·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	
읍·면·동	법정동	통의 명칭	반	관할 구역	비고	읍·면·동	법정동	통의 명칭	반	관할 구역	비고
부춘동	읍내동	35	1	읍내 624-5 부영(아) 103동(101~511)		부춘동	읍내동	35	1	읍내동 부영APT 103동(101~311)	
			2	읍내 624-5 부영(아) 103동(601~1011)					2	읍내동 부영APT 103동(401~611)	
			3	읍내 624-5 부영(아) 103동(1101~1511)					3	읍내동 부영APT 103동(701~911)	
			4	읍내 624-5 부영(아) 104동(101~512)					4	읍내동 부영APT 103동(1001~1211)	
			5	읍내 624-5 부영(아) 104동(601~1012)					5	읍내동 부영APT 103동(1301~1511)	
			6	읍내 624-5 부영(아) 104동(1101~1512)					6	읍내동 부영APT 104동(101~312)	
									7	읍내동 부영APT 104동(401~612)	
									8	읍내동 부영APT 104동(701~912)	
			6	읍내 624-5 부영(아) 104동(1101~1512)					9	읍내동 부영APT 104동(1001~1212)	
									10	읍내동 부영APT 1042동(1301~1512)	

현				개				정				안					
[별표] 동지역에 설치하는 통·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				[별표] 동지역에 설치하는 통·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				[별표] 동지역에 설치하는 통·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				[별표] 동지역에 설치하는 통·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					
읍·면·동	법정동	통의 명칭	반	관할 구역	비고	읍·면·동	법정동	통의 명칭	반	관할 구역	비고	읍·면·동	법정동	통의 명칭	반	관할 구역	비고
부춘동	읍내동	36	1	읍내 624-5 부영(아) 104동(101~511)		부춘동	읍내동	36	1	읍내동 부영APT 105동(101~311)		부춘동	읍내동	36	1	읍내동 부영APT 105동(101~311)	
			2	읍내 624-5 부영(아) 104동(601~1011)					2	읍내동 부영APT 105동(401~611)					2	읍내동 부영APT 105동(401~611)	
			3	읍내 624-5 부영(아) 104(1101~1511)					3	읍내동 부영APT 105동(701~911)					3	읍내동 부영APT 105동(701~911)	
			4	읍내 624-5 부영(아) 104동(101~512)					4	읍내동 부영APT 105동(1001~1211)					4	읍내동 부영APT 105동(1001~1211)	
			5	읍내 624-5 부영(아) 104동(601~1012)					5	읍내동 부영APT 105동(1301~1511)					5	읍내동 부영APT 105동(1301~1511)	
			6	읍내 624-5 부영(아) 104동(1101~1512)					6	읍내동 부영APT 106동(101~312)					6	읍내동 부영APT 106동(101~312)	
									7	읍내동 부영APT 106동(401~612)					7	읍내동 부영APT 106동(401~612)	
									8	읍내동 부영APT 106동(701~912)					8	읍내동 부영APT 106동(701~912)	
									9	읍내동 부영APT 106동(1001~1212)					9	읍내동 부영APT 106동(1001~1212)	
									10	읍내동 부영APT 106동(1301~1512)					10	읍내동 부영APT 106동(1301~1512)	

審 查 報 告 書

2001. 12. 22

총무위원회

1. 審 查 經 過

가. 提出日字 : 2001. 11. 20

나. 提出者 : 瑞山市長

다. 回附日字 : 2001. 11. 22

라. 上程日字 : 2001. 12. 22

2. 提案說明要旨(提案說明 : 保健課長 李榮振)

가. 提案理由

- 그동안 충청남도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시·군에도 동 기금을 설치토록 됨에 따라
- 식품진흥기금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나. 主要骨子

- 식품진흥기금의 재원 조성 및 사용용도를 명확히 규정함.
- 기금의 조성 및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관리 위원회를 구성함.
- 식품위생업주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용자대상업종을 정함.

-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,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토록함.

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

- 금번에 제정코자하는 조례안은 그동안 충남도지사가 관리·운영하던 「식품진흥기금」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시군에도 기금을 설치 운용토록 위임된 사항으로서 시민의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하는데 제정 취지가 있다 하겠음.
- 본 제정 조례안은 본문 20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각조는 조례제정 목적과 기금조성의 재원 및 기금의 용도 등을 분명히 정하고 있으며 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금관리 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음.
- 또한 시설개선자금의 용자에 관한 제반 절차와 기금의 결산과 보고, 관련규정의 준용규정 등을 자세히 적시하고 있어 조례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며 상위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.

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: 생략

5. 討論 및 小數意見 : 없었음

6. 審査結果 : 원안가결